

WTO 발리 각료회의 합의문 *

임 송 수
(고려대학교 식물자원경제학과 교수)

1. 발리(Bali) 각료회의 배경

제9차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가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2013년 12월 3~7일에 열렸다. 발리 각료회의는 이른바 “발리 패키지(Bali Package)”를 채택함으로써 2001년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가 출범한 이후 오랜 기간 교착상태에 놓여 있던 무역협상을 되살렸다.

WTO 각료회의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로 2년에 최소 한 번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995년에 WTO 체제가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총 9차례의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그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001년 DDA 출범 이래 각료회의는 협상방향의 큰 틀을 제시한 2004년 Framework 합의와, 수출보조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2005년 홍콩 각료선언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 또한 아직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많은 쟁점들에 관한 구체적 대안들을 제시한 협상의 세부원칙(modalities)인, 이른바 2008년 7월 패키지(July 2008 Package)를 토대로 협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¹⁾²⁾³⁾

* (songsooc@gmail.com).

1) 세부원칙은 농장개혁의 자세한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예를 들면 관세 및 보조 감축 방법과 감축률을 공식(formulas)으로 제시한 규정을 말한다(http://www.wto.org/english/tratop_e/agric_e/chair_texts08_e.htm#10july08).

표 1 WTO 각료회의의 동향

회	날짜	개최 장소	주요 의제
1	1996.12.9.-13.	싱가포르	이른바 “환경라운드(Environment Round)” 가 출범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으나 실현되지는 않음.
2	1998.5.18.-20.	스위스 제네바	“전자상거래에 대한 WTO 각료선언(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을 채택하여,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무관세를 유지하기로 함.
3	1999.11.30.-12.3.	미국 시애틀	뉴라운드의 출범이 시도되었으나 합의에 실패함. WTO에 반대하는 국제 NGO 등에 의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여 주목받음.
4	2001.11.9.-13.	카타르 도하	DDA 무역 라운드의 출범에 합의함.
5	2003.9.10.-14.	멕시코 칸쿤	정부조달, 무역원활화,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 등 이른바 “싱가포르 이슈(Singapore Issues)” 가 주요 의제로 제시되었으나, 개도국의 강한 반대로 채택하지 못함. 미국과 EU의 농업보조 문제가 대두되었고, 주요 개도국 연대인 G20가 결성됨.
6	2005.12.13.-18.	홍콩	농업 수출보조를 2013년까지 폐지하기로 합의하였고, 면화 수출보조에 대해서는 2006년까지 철폐하기로 함. 최빈개도국(LDCs)에 대해서는 무관세-무쿼터(duty-free, quota-free)를 적용하기로 함.
7	2009.11.30.-12.2.	스위스 제네바	2년마다 열리기로 한 각료회의를 회복함. 다자무역체제와 현재의 세계경제 환경에 대해 논의함.
8	2011.12.15.-17.	스위스 제네바	수출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식량안보를 확충하도록 하는 제안서가 제시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9	2013.12.3.-7.	인도네시아 발리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개도국의 식량안보와 개발문제를 다룬 이른바 “발리 패키지(Bali Package)” 에 합의함.

자료: WTO(http://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inist_e.htm)를 기초로 정리.

그러나 여전히 개발(development)과 무역자유화의 방식과 역할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점 차이로 인해 DDA 협상의 교착상태 또는 심지어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죽음이란 표현으로 묘사될 만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⁴⁾ 곧 선진국의 관심사항인 신흥개도국 시장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와 개도국의 관심사항인 선진국의 농업보조 감축과 식량안보 보장 조치 등에서 양측의 첨예한 대립 구조가 지속되면서 12년간의 지루한 협상이 명맥만 유지한 채 이어져 왔다. 이러한 가운데 발리 패키지는 양 측의 최소공배수를 이끌어 냄으로써 세부원칙 타결에 한발 다가설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다.

발리 각료회의에는 총 159개 회원국의 대표단이 참여하였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

2) 농업협상분야의 세부원칙은 여러 번의 수정안이 제시된 상태이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WTO 웹사이트에서 살펴볼 수 있다.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gric_e/agchairtxt_dec08_a_e.pdf).

3) 최근의 농업분야에 관한 협상 동향은 송주호(2013)를 참조하기 바란다.

4) BBC 뉴스 웹사이트 참조. (<http://news.bbc.co.uk/2/hi/business/5215318.stm>).

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2013).

2. 발리 패키지 주요 내용

발리 패키지는 DDA 협상 의제 가운데 조기수확(early harvest) 대상인 ①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② 농업(agriculture), ③ 면화(cotton), ④ 개발 및 최빈개도국(development and LDC issues) 분야의 10개 합의문(Ministerial Decision)으로 구성된다<표 2 참조>. 조기수확 대상 또는 신속하게 추진할(fast track) 의제란 DDA 모든 의제의 일괄타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합의 가능한 분야로 정한 것을 말한다.

표 2 발리 패키지(Bali Package)의 구성

분야	각료결정문	WTO 문서번호
무역원활화 (Trade Facilitation)	무역원활화 협정(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WT/MIN(13)/36 — WT/L/911
농업 (Agriculture)	일반서비스(General Services)	WT/MIN(13)/37 — WT/L/912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Public Stockholding for Food Security Purposes)	WT/MIN(13)/38 — WT/L/913
	농산물의 관세할당 방식 규정에 관한 양해서(Understanding on Tariff Rate Quota Administration Provis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WT/MIN(13)/39 — WT/L/914
	수출경쟁(Export Competition)	WT/MIN(13)/40 — WT/L/915
면화 (Cotton)	면화(Cotton)	WT/MIN(13)/41 — WT/L/916
개발 및 최빈개도국 문제 (Development and LDC issues)	LDC를 위한 특혜 원산지 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WT/MIN(13)/42 — WT/L/917
	LDC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특혜조치 관련 예외조치의 운영(Operationalization of the Waiver Concern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Least-Developed Countries)	WT/MIN(13)/43 — WT/L/918
	LDC를 위한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Duty-Free and Quota-Free Market Access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WT/MIN(13)/44 — WT/L/919
	특별우대조치의 모니터링 체제(Monitoring Mechanism on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WT/MIN(13)/45 — WT/L/920

자료: WTO(<https://mc9.wto.org/draft-bali-ministerial-declaration>)

본고에서는 농업분야의 합의문 전문을 번역하여 제시하고, 그에 관한 간단한 배경 해설을 제시하고자 한다.5)

2.1. 일반 서비스

2.1.1. 해설

WTO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부속서 2(Annex 2)에는 농업보조 가운데 회원국들이 농정개혁 측면에서 감축하지 않아도 되는 11가지 허용보조(Green Box)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⁶⁾⁷⁾ 허용보조 가운데 하나인 일반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public goods)에 관한 지출을 말하며, (a) 연구, (b) 병해충 통제, (c) 훈련 서비스, (d) 지도와 자문 서비스, (e) 검역 서비스, (f) 유통과 관측 서비스, (g) 인프라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그 동안 많은 개도국들은 일반 서비스 조치가 선진국 위주로 예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개도국들이 중점으로 추진하는 정부 서비스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개도국들은 토지개혁과 농촌의 생계보장과 관련된 사항들을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이 합의되었다.

2.1.2. 결정문(WT/MIN(12)/W/9)

각료회의는 마라케시 협정(Marrakesh Agreement) 9조 1항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다.

회원국들은 일반 서비스 프로그램이 특히 개도국의 농촌 발전, 식량 안보, 빈곤 완화 등에 이바지해 온 점을 인정한다. 이는 많은 개도국들이 토지 개혁과 농촌 생계보장을 위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해 온 다양한 일반 서비스 프로그램을 말한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WTO 농업협정 부속서 2의 2항의 제약 속에서 아래에 열거된 프로그램 형태를 농업협정 부속서 2의 2항에 예시된 일반 서비스 프로그램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농촌개발과 빈곤 완화를 위한 토지 개혁과 농촌 생계보장과 관련한 일반 서비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i. 토지 복구(land rehabilitation)
- ii. 토양 보존과 자원 관리(soil conservation and resource management)

5) 본고에서 제시한 WTO 각료 합의문에 관한 번역은 순전히 독자의 이해를 위한 것이며, 공식적인 것이 아님을 밝힌다.

6) 허용보조 조치는 ① 일반서비스, ②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③ 국내 식량원조, ④ 비연계 소득보조, ⑤ 소득보험, ⑥ 재해보조, ⑦ 생산자 은퇴, ⑧ 농업자원 폐기, ⑨ 투자보조, ⑩ 환경 프로그램, ⑪ 지역보조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14-ag_02_e.htm#ann1)

7) WTO 체제가 출범한 1995년 이후 미국과 EU는 감축대상보조(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를 줄인 반면에 허용보조의 규모는 큰 폭으로 확대해 사실상 전체 농업보조 규모가 이전보다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http://capreform.eu/latest-eu-ams-notification-confirms-declining-trend-in-wto-amber-box-support/>)

- iii. 가뭄 관리와 홍수 통제(drought management and flood control)
- iv. 농촌 고용 프로그램(rural employment program)
- v. 부동산 소유권 발행(issuance of property titles)
- vi. 농민 정착 프로그램(farmer settlement program)

2.2.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2.2.1. 해설

중국, 인도 등 다수의 소규모 농가를 지닌 개도국 모임인 G33은 각료회의에 대비하여 2012년 11월에 식량안보에 관한 제안서를 WTO 농업협상위원회에 제시한 바 있다(WTO 2012).⁸⁾ G33의 관점에서 이 제안서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과 관련해 새로운 규정을 제안하였다. 곧 정부가 저소득 및 자원빈곤(resource-poor)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공공비축용 식량을 보조된 가격으로 구매할 경우 이를 감축대상보조(AMS)에 포함시키지 말자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구매한 식량을 도시와 농촌의 저소득 계층에 공급했을 경우 구매한 가격과 외부 참조가격(external reference price)의 격차를 $AMS = [구매가격 - 외부 참조가격] \times 생산량$ 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⁹⁾ 지금의 농업협정 부속서 2(허용보조)에 따르면 이 격차는 AMS에 포함되며, 회원국은 AMS 상한을 지켜야 한다.

G-33의 논리는 외부 참조가격이 1987~88년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어 AMS 산출이 과대 계상된다는 점이다. 그 동안 생산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이를 구매가격에 반영할 경우 AMS가 자동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AMS 양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된 대다수의 개도국에 있어 이러한 식량안보 정책은 AMS 상한을 초과하기 쉬운 정책시행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G-33은 외부 참조가격을 최근 5년 가격을 기준으로 한 3개년 올림픽 평균(Olympic average), 또는 해당 국가의 최대 식량 공급 농가(1-3위)의 연평균 생산자가격(예: AMS 산출하는 연도의 바로 전년도 가격수준을 외부 참조가격으로 간주하자는 것)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하였다(WTO 2013).

WTO 규정상 외부 참조가격은 갱신(periodic reassessment)이 가능하다(GATT 1990). 그

8) 한국을 비롯하여 46개국의 처지를 대변하고 있는 G-33은 개도국 관련 조치의 신속적인 적용을 강조한다. 특히 개도국의 식량안보와 농촌 생계보장에 중요한 농산물을 이른바 "특별품목(Special Products)"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해서는 관세감축 면제나 낮은 감축률 등을 적용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G33 구성 국가 목록은 다음 WTO 웹사이트 참조.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gric_e/negoti_groups_e.htm).

9) 농업협정 부속서 3의 3항에 따르면, 외부 참조가격은 1986-88년의 평균 f.o.b. 단위가격(순 수출국) 또는 평균 c.i.f. 단위가격(순 수입국)을 말한다.

러나 이러한 논의는 지금까지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았다. 일부 회원국이 지나친 물가 상승률(inflation)의 경우 AMS 산출에 감안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공감대를 이루지 못해 왔다.¹⁰⁾ 또한 선진국의 경우 AMS 조치의 상당 부분을 허용보조로 전환해 온 결과 AMS 이행에 여유가 있는 만큼 외부 참조가격의 갱신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많은 선진국과 수출 개도국들은 이와 같은 G-33 제안서 내용이 무역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예를 들면, 인도의 경우 저소득 및 자원빈곤 농가에 해당하는 비중이 전체 농가의 98.97%에 해당하여 사실상 모든 농가에 대한 가격보조가 허용보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ICTSD 2012).

이처럼 상반된 견해 속에 각료회의는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추후에 협상을 통해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곧 개도국의 이러한 식량안보 조치에 대해 회원국들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평화조항(peace clause)을 잠정조치로 인정한 것이다.

2.2.2. 결정문(WT/MIN(13)/W/10)

각료회의는 마라케시 협정(Marrakesh Agreement) 9조 1항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다.

1. 회원국들은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문제와 관련해 아래에 명시한 잠정조치(interim mechanism) 도입에 합의하고, 제11차 각료 회의 때까지 채택할 영구 해결책(permanent solution)에 관한 협정을 협상하기로 한다.
2. 영구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회원국들은 WTO의 분쟁해결 절차(Dispute Settlement Mechanism)를 통한 분쟁 제기를 자제해야 한다. 이는 개도국이 이 결정문의 조건들을 따를 경우 전통적인 주곡 식량의 공급과 관련하여 추구하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프로그램이 농업협정 부속서 2의 3항, 각주 5 및 각주 5와 6의 기준과 일관된 농업협정 6.3조와 7.2(b)조의 요건에 대한 이행이다.

통보와 투명성(Notification and Transparency)

3. 이 결정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개도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a. 농업위원회에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 프로그램으로 인해 해당 국가의 AMS 기

10) 다음 WTO 웹사이트 참조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gric_e/negs_bkgmd13_boxes_e.htm>.

준(총 양허 AMS 또는 최소허용보조)을 초과했거나 또는 초과할 위기에 있다는 것을 보고해야 한다.

- b. 1995년 6월 30일 G/AG/2 문서 내용과 일치하는 농업 협정의 요구 사항에 따라 개발도상국가의 국내 보조에 대해 계속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부속서 내용 참조).
- c. 부속서에 수록된 견본을 참고하여 매년 식량 안보 목적 공공 비축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 및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d. 이전에 보고된 정보에 수정할 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부속서의 통계 부록에 표기된 추가적인 통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회피 방지/세이프가드(Anti-Circumvention/Safeguards)

4. 위 2항의 내용에 따른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개도국은 프로그램으로부터 조달된 비축 물량이 무역을 왜곡하거나 다른 나라의 식량안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5. 이 결정문이 위 3(a)항 아래 통보된 것 이외의 프로그램에서 회원국의 총 AMS 양허수준이나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대상 보조규모를 증가시키는 형태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자문(Consultations)

6. 이 의사결정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개도국은 다른 회원국들의 신청을 받아 그들의 공공 비축 프로그램의 운용에 대한 자문회의를 열어야 한다.

모니터링(Monitoring)

7. 농업 위원회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관찰 및 감시해야 한다.

작업 계획(Work Programme)

8. 회원국들은 영구적 해결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설립하는데 동의한다. 이 작업 계획은 회원국들의 현재와 미래의 개진 사항들을 고려할 것이다.
9. 발리 이후 의제(Post-Bali agenda)의 확장선상에서 회원국들은 늦어도 제11차 각료 회의 때까지 작업 계획을 만들어 종결해야 한다.
10. 일반 이사회(General Council)는 작업계획의 운용 평가에 관해 제10차 각료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부속서

양식(Template)

[개도국 회원 국가의 이름]

일반 정보(General information)

1. 국내보조(DS:1) 통보 및 이를 뒷받침하는 지난 5년간 갱신된 자료를 입증하는 사실 기반의 정보	
2. 식량 안보의 목적과 프로그램의 크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비축 프로그램의 세부 정보(다음의 사항을 포함)	
a. 프로그램의 수	b. 적용 대상 전통 주곡 작물
c. 프로그램 시행 담당기관	d. 관련 법규
e. 프로그램 개시 일자	f. 공식으로 천명된 객관적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
3.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한 사실 설명	
a. 주식 매입 정보 (관리조달가격을 결정하는 메커니즘 포함)	
b. 주식의 체화와 거래량에 대한 정보 (예정 목표 및 물량 제한에 관한 정보 포함)	
c. 주식 해지에 대한 정보 (해지가격과 타겟팅 결정 사항 포함)	
4. 생산 최소화 혹은 프로그램의 무역 왜곡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조치들에 대한 설명	
5. 통계 정보(아래 통계 부록 참고)	
6. 홈페이지 참고사항을 포함하여 이외의 다른 정보들도 제공	

통계 부록 (작물 기준) (최근 3년 간 자료)

	단위	1년차	2년차	3년차
[작물 이름]				
a. 연초 재고량				
b. 프로그램 아래 연간 구매액				
c. 프로그램 아래 연간 구매량				
d. 프로그램 아래 연간 방출액				
e. 프로그램 아래 연간 방출량				
f. 구매가격				
g. 방출가격				
h. 연말 재고량				
i. 총 생산량				
j. 총 생산액				
k. 해당 작물의 방출에 따라 혜택을 받는 인구와 방출량에 관한 정보				
- 국가 단위의 수혜자 추정인구, 가능하다면 지역 단위 입력				
- 국가 단위의 수혜자에게 보급된 물량, 가능하다면 지역 단위 입력				
- 기타				
l. 민간저장고로 정부원조가 제공되었을 경우 제공된 보조에 대한 통계와 갱신된 자료				
m. 총 수입액				
n. 총 수입량				
o. 총 수출액				
p. 총 수출량				

2.3. 농산물의 관세할당 방식에 관한 양해서

2.3.1. 해설

관세할당(tariff-rate quota, TRQ)은 일종의 이중관세 조치로 쿼터 내 수입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in-quota rate)를 적용하고, 쿼터 초과 수입량에는 높은 관세(out of quota rate)를 매기는 체제이다. TRQ 대상 품목은 UR때 관세화(tariffication)된 품목, 또는 회원국의 양허안 수정에 의해 허용된 조치이다. 수입국엔 시장개방 충격을 완화하는 안정장치로, 수출국엔 최소한의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일종의 타협 조치이다.

DDA 협상의제로서 TRQ는 농정개혁의 완성이란 측면에서 이 조치의 폐지, 곧 오직 관세체제(tariff-only system)의 완성(수출국) 또는 관세감축 및 쿼터 증량(수입국) 주장이 대립되어 왔으나, TRQ 체제의 유지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떻게 쿼터 소진율(fill rate: 쿼터 대비 실제 수입량 비율, %)을 높이고, 비관세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TRQ 수입관리방식(수입권 배분)을 개선해서 수출국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¹¹⁾

이번 각료회의 합의문은 저조한 쿼터 소진율이 나타날 경우 강제로 수입관리방식을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쿼터 소진율 65%를 기준으로 삼아 미소진 쿼터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2.3.2. 결정문(WT/MIN(13)/W/11)

각료회의는 마라케시 협정(Marrakesh Agreement) 9조 1항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다.

1. TRQ 관리방식은 UR 수입허가절차 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에 명시된 “수입허가(import licensing)”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이 협정은 농업협정과 아래 세부 요건의 제약아래 완전한 형태로 적용되어야 한다.
2. 수입허가절차 협정의 1조 4(a)항과 관련 농업 TRQ가 협상되고 양허되었을 때에 관련 정보가 TRQ 개시 최소 90일 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쿼터배분 신청이 필요할 경우 신청 개시 이전에 같은 기간이 허용되어야 한다.
3. 이 협정 1조 6항과 관련 TRQ 신청자는 오직 한 관리부서에 지원해야 한다.

11) 쿼터의 수입관리방식은 국영무역, 경매, 선착순, 과가실적 기준배분, 실행관세(applied tariff)로 수입허용 등 다양하다.

4. 이 협정 3조 5(f)항에 언급된 문제와 관련해 신청 처리기간은 신청 접수("as and when received" case) 후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신청과 승인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simultaneous" case) 최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허가발행이 관련 쿼터의 효과적인 개시일보다 늦게 이뤄지지 않아야 하는데, 협정의 1.6조 아래 신청 연장의 경우는 예외이다.
5. 3조 5(i)항과 관련 TRQ 허가는 경제적 물량(economic quantity)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6. 쿼터 소진율(fill rates)은 통보되어야 한다.
7. 수입관리 절차가 협정의 3.2조, 곧 조치의 이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입국은 미소진 쿼터에 대한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검증(absolute necessity test)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제약하는 행정 절차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도록 보장해야 한다.
8. 민간업자에 의해 소유된 수입허가가, 정상적인 운영자가 같은 상황에서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이외의 이유로 완전한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는 현상을 나타낼 경우 허가를 배분하는 회원국은 미활용 이유를 검토하고, 3조 5(j)항에 따라 새롭게 허가 배분을 고려할 때 이를 감안해야 한다.
9. 쿼터가 소진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나 이에 대한 상업적인 이유가 없다면 수입국은 미소진 수입권한을 소유한 민간 운영자로 하여금 다른 잠재적 사용자에게 수입권한을 이양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배분(country-specific allocation)처럼 쿼터가 제3국의 민간 운영자에 의해 소유된 경우 수입국은 수입권한 양도를 요구해야 한다.
10. 이 협정의 3조 5(a)(ii)항과 관련하여 회원국은 쿼터 양허물량에 접근할 수 있는 수입권한을 소유한 수입업자에 관한 자세한 연락처를 공개하되, 1조 11항의 조건아래 수입업자의 동의를 얻거나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11.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는 이 양해서 아래 회원국의 의무사항 이행

을 검토하고 감독해야 한다.

12. 회원국은 부속서 A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효과적인 재분배(re-allocation)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3. 이 합의문의 운영에 관한 검토는 합의문을 채택한 후 4년차 전에 시행하되 그 때까지 축적한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검토의 목적은 쿼터 활용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검토의 전후 과정에서 일반 이사회(General Council)는 부속서 A의 4항을 재확인하고 또는 미래 운영방식을 조정할지 여부와 그 방법을 포함하여 12차 각료회의에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14. 4항에 관한 일반 이사회 회의 제안서는 개도국 특별우대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12차 각료회의가 부속서 A의 4항을 현재대로 또는 개선된 형태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15항에 따라 이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15. 위 14항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이 조항의 연장에 관한 결정의 부재 시 부속서 A의 4항 규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부속서 A의 4항에 대한 적용을 지속하지 않을 것을 표명한 회원국과 부속서 B에 제시된 회원국은 예외로 한다.

부속서 A

1. 검토 첫해에 수입국이 소진율을 통보하지 않았거나 소진율이 65% 미만일 경우 어느 회원국이라도 농업위원회에 쿼터 의무사항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관심사항을 사무국(Secretariat)이 관리하는 추적 기록부(tracking register)에 등록할 수 있다. 해당 수입국은 모든 이해 당사국들과 쿼터 관리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 논의의 목적은 제기된 관심사항의 이해, 시장상황에 대한 회원국의 이해 증진, 쿼터가 관리되는 방식과 그 관리방식의 특정 요인이 쿼터 미소진의 원인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 논의는 특히 시장상황에 관한 객관적이고 적절한 자료의 제공 아래 이뤄져야 한다. 이해 당사국은 해당 수입국이 제출한 모든 문서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해당 수입국은 이해 당사국에 제출한 모든 문서의 요약본을 농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된 회원국들은 이 문제가 해

결되었는지 여부를 농업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이해 당사국들은 논의와 제공된 문서를 기초로 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 지에 관한 명확한 진술서를 농업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와 정보는 회원국의 관심사항에 대응하고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2단계와 3단계의 미소진 체계 (underfill mechanism)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고려될 수 있다.

2. 소진율이 2년 연속 65%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소진율이 통보되지 않아 미소진 체계가 발동되면 어느 회원국이라도 농업위원회를 통해 해당 수입국이 관련 쿼터의 관리방식을 조정하는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수입국은 요구된 특정 조치 또는 이해 당사국들과 이전에 가진 논의에서 도출한, 쿼터 소진율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만약 수입국의 이러한 조치가 소진율 65%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데이터에 기초한 논의를 통해 낮은 소진율이 실제로 시장상황에 의한 것임을 이해 당사국들이 납득하였다면 이 사실은 사무국의 추적 기록부에 기록되고 해당 관심사항이 “해결된(resolved)” 것으로 표시되어 더 이상 검토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단,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이 과정이 다시 시작되지 않아야 하고, 만약 그렇다면 새로운 3년 주기의 절차가 될 것이다). 만약 소진율이 65% 미만으로 남아 있다면 어떤 회원국이라도 쿼터 관리방식에 관한 추가적인 개선을 계속 요구할 수 있다.
3. 3차년 및 이후 검토 기간에 다음에 해당될 경우
 - a. 소진율이 3년 연속 65% 미만이거나 해당 기간에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 b. 이전 3년 동안 연간 소진율 증가가 다음처럼 이뤄지지 않았을 때
 - i. 소진율이 40%를 초과할 때 최소 8% 포인트
 - ii. 소진율이 40% 이하일 때 최소 12% 포인트
 - c. 데이터에 기초한 시장 상황 관련 논의가 모든 이해 당국들 사이에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이것들이 사실상 미소진의 이유일 때
 - d. 어떤 이해 당사국이라도 미소진 체계의 최종 단계를 발동하길 원한다는 의향서를 농업위원회에 제시한 경우
4.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수입국은 신속하게 다음 쿼터 관리방식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한다(국경에서 오직 선착순에 의한 배분, 또는 쿼터 상한아래 요구에 따른 자동적, 비조건부 허가 중 제시). 이 두 가지 대안 중 어느 것을 이행할 지와 관련

하여 해당 수입국은 수출 이해 당사국들과 상의해야 한다. 선택된 방법은 최소한 2년 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그 2년간의 실적이 적절히 통보될 경우 사무국의 추적 기록부에 등록되어 해당 관심사항이 “종료(closed)”된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개도국은 다른 쿼터 관리방식을 채택하거나 현재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 미소진 체계아래 다른 쿼터 관리방식은 농업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선택된 방식은 해당 수입국에 의해 최소 2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그 이후 만약 소진율이 위 3(b)항에 제시된 연간 증가율의 2/3만큼 증가하였다면 사무국의 추적 기록부에 등록되어 “종료”된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5. 회원국에 의한 미소진 체계의 이용 가능성은 그 체계아래 다루어지는 문제들과 관련된 협정들이 명시한 다른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어떠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해당 협정의 규정들이 우선 적용될 것이다.

부속서 B

바베이도스(Barbados)
도미니카 공화국(Dominican Republic)
엘살바도르(El Salvador)
과테말라(Guatemala)
미국(USA)

2.4. 수출 경쟁

2.4.1. 해설

수출경쟁은 수출보조, 수출신용, 국제 식량원조, 국영무역업체 등을 포괄하는 조치이다. 농업보조 가운데 무역왜곡 정도가 가장 크다고 지목되어 이미 2005년에 채택된 홍콩 각료선언문은 어떠한 형태의 수출보조라도 2013년까지 철폐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¹²⁾ 8년 전에 제시한 이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협상 진척을 위해 수출 개도국 협상그룹인 G-20은 2013년에 2008년 7월 패키지가 담고 있는 감축의무보다 낮은 수준의 제안서를 WTO에 제시하였으나, 수출경쟁 관련

12) 홍콩 각료선언문은 다음 WTO 웹사이트 참조: <http://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in05_e/final_text_e.htm>

보조의 최대 사용국인 EU와 미국이 이를 거부하였다. EU와 미국은 다른 DDA 협상의 제의 균형이 맞다는 조건 아래 수출경쟁 부분의 개혁을 약속대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TWN 2013).

이번 발리 패키지는 이전 결정사항을 재확인하고 이 의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앞으로 논의를 계속 진행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2.4.2. 결정문(WT/MIN(13)/W/12)

1. 모든 형태의 수출 보조와 이와 동등효과를 지닌 수출 조치들은 높은 무역 왜곡 효과와 보호주의의 형태를 가지므로 2005년 홍콩 각료선언문과 도하(Doha) 작업 계획에 따라 농업협정 20조가 제시한 지속적인 농정개혁의 과정 속에 주요 우선 순위 농업협상 의제로 남아 있다.
2. 이러한 측면에서 2005년 홍콩 각료선언문에 명시한 대로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의 철폐와 이에 상응한 효과를 지닌 모든 수출조치에 관한 규율을 협상의 결과물로서 인정하고 다시 한 번 그 약속을 확인하다. 그 선언문이 제시한 2013년까지 그 약속 이행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
3. 농업부분의 모델리티 개정안(TN/AG/W/4/Rev.4, 2008년 12월)은 수출경쟁 분야의 의욕적인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며, 여기에는 최빈개도국(LDC)과 식량순수입 개도국(NFIDC)에 대한 특별우대조치도 포함된다.
4. 농업협정 아래 회원국들이 WTO에 통보한 정보에 나타났듯이 최근에 감축대상 수출보조의 사용이 감소하였고, 수출경쟁의 다른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발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5. 일부 회원국들이 시행한 개혁조치가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를 이끌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기초가 도하 협상에서 수출경쟁에 관한 최종 목표달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6. 2005년 홍콩 각료선언문에 명시한 최종 목표를 가능한 빨리 성취하기 위해 도하 협상 아래 이 분야의 공고한 진전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회원국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7. 이에 따라 수출경쟁 분야에서 회원국들의 국내 농정개혁 유지와 추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개혁이 갖는 양(+)의 영향과 반대로 개혁의 실패가 초래하는 심각한 음(-)의 결과를 감안할 때 이러한 방향에서 개혁을 추진해 온 회원국과, 아직 개혁조치를 단행하지 않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개혁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8. 위에 언급된 긍정적 기초들과 함께 홍콩 각료선언문이 제시한 수출경쟁 목표를 위해 모든 형태의 수출 보조와 그와 동등한 효과를 지닌 모든 수출 조치의 사용을 자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가능한 최대 범위로 시행할 것이다.
 -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 철폐와 그와 동등한 모든 형태의 수출조치에 대한 규율
 - 회원국들의 수출보조 양허수준보다 크게 낮은 수준의 수출보조 수준 유지
 - 동등한 효과를 지닌 모든 수출 조치에 대한 비슷한 수준의 규율 적용
 9. 2005년 홍콩 각료선언문이 수출경쟁에 관해 제시한 목적 달성은 발리 이후(post Bali) 작업계획의 높은 우선순위로 남기기로 한다. 이 분야가 가능한 한 빨리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작업을 지속하기로 합의한다.
 10. 이에 따라 개혁과정을 지지하기 위해 투명성을 증진하고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와 이와 동등한 효과를 지닌 모든 수출조치에 관한 관측을 개선하기로 약속한다.
 11. 따라서 수출경쟁 분야의 진전을 검토하기 위해 농업위원회가 해마다 이를 논의하기로 합의한다. 이 검토과정은 2005년 홍콩 각료선언문이 제시한 최종 목표를 진전시키는 측면에서 수출경쟁에 관련한 어떠한 문제라도 회원국들이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12. 이러한 검토과정은 관련 농업협정 규정아래 통보되는 정보 및 관련된 결정, WTO 사무국이 제시한 정보, 부속서에 제시한대로 2013년에 시행한 회원국 대상 설문지를 기초로 추진한다.
 13. 10차 각료회의에서 수출경쟁에 관한 상황을 검토하기로 동의한다. 또한 이 선언문의 요건들이 해당 협정들이 다루는 회원국들의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러한 권한과 의무를 해석하는데 사용되지 않아야 함에도 동의한다.

부속서

수출경쟁에 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요소들

이 부속서는 위 12항이 언급한 설문지와 관련 WTO 사무국에 의해 요구된 정보의 형태를 예시한 것이다. 이 설문지는 회원국들의 통보의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며 회원국들의 경험과 관점 측면에서 재편될 수도 있다.

수출보조

1. 수출 조치들의 운영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

수출신용,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제도 (수출금융)

1.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다음의 분류: 직접 금융보조, 위험회피(risk cover), 정부 간 신용협정 혹은 정부 수출신용보조) 및 관련 규정
2. 수출금융기관에 대한 설명
3. 수출신용, 수출신용 보증 및 보험제도에 해당하는 총 농산물 수출액
4. 각 프로그램의 연간 평균 보험료율/수수료
5. 각 프로그램의 최대 분할 상환기간
6. 각 프로그램의 연간 평균 분할 상환기간
7. 각 프로그램의 수출 목적지
8. 개별 생산물 혹은 생산물 그룹의 프로그램 활용

식량원조

1. 농산물에 관한 설명
2. 제공된 식량원조의 물량과 가치
3. 식량원조가 현물, 조건 없는 현금 기준으로 제시되었는지 그리고 화폐화(monetization)가 가능한 지에 관한 설명
4. 완전 무상 혹은 양허 조건 아래 제공된 것인지에 관한 설명
5. 적절한 요구평가(needs assessment)와 식량원조가 긴급사태 선언이나 호소에 대응한 것인지에 관한 설명(주체 포함)
6. 식량원조의 재수출이 식량원조 제공의 조건 하에 가능한지에 관한 설명

농산물 수출 국영무역기업

1. 국영무역기업의 목록 열거
 - 국영무역기업에 관한 확인
 - 관련된 농산물에 관한 설명(관세라인 포함)
2. 근거와 목적
 - 국영무역기업의 설립 및 유지 이유 또는 목적
 - 독점권이나 특권을 인정하는 법 규정
3. 국영무역기업의 기능 설명
 - 국영무역기업의 운영에 관한 설명 보고 요약문
 - 국영무역기업이 누린 독점권이나 특권에 관한 자세한 사항

일반 상업비밀 고려사항에 관한 추가 정보

1. 수출(가치/물량)
2. 수출가격
3. 수출 대상국

상당한 정책개혁으로 인해 정책에 관한 정보는 더 이상 수집하지 않는다.

3. 발리 패키지에 관한 평가

DDA 의제의 축소판으로서 발리 패키지는 2년 전부터 준비되어 왔다. 주로 선진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무역원활화 협정이 타결되고, 개도국이 주장해 온 식량안보 목적의 보조가 한시적으로나마 허용되면서 양측 간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농업분야에서 인도는 앞으로 4년간 식량안보 목적 하에 국내보조 상한을 초월하는 보조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평화조항 형태로 부여된 혜택이란 점에서 인도는 이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농산물 수출 개도국들은 인도에 부여된 혜택으로 말미암아 자국의 수출 잠재력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 또한 일부 선진국들은 이번 합의가 정책개혁의 후퇴라고 혹평하기도 하였다.

TRQ 관리방식의 개선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TRQ는 주로 선진국에 적용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수출경쟁과 관련한 합의문은 이전 합의를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선에 머물고 있다는 인상이다. 2008년 패키지보다 낮은 수준의 G-20 제안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출경쟁 분야의 개혁이 정치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될 것임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리에서 이룬 합의는 전체 DDA 협상 타결의 디딤돌로서 의미를 지닌다. 다자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되살렸고, 논의를 통해 쟁점을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번 논의에서 일부 미래 작업계획이 제시된 것처럼 DDA 협상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면, 과연 4년 안에 식량안보에 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과제는 지금까지 협상경험을 고려할 때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아주 불확실한 협상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문헌

- 산업통상자원부. 2013. 제9차 WTO 각료회의 결과. 보도참고자료.
- 송주호. 2013. “WTO 농업분야 논의 동향.” 세계농업 Vol.150(2): 177-189.
http://www.motie.go.kr/motie/ne/rt/press/bbs/bbsView.do?bbs_seq_n=78569&bbs_cd_n=16
- GATT. 1990. Framework Agreement on Agriculture Reform Programme: Draft Text by the Chairman.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the Uruguay Round, MTN.GNG/NG5/W/170, 11 July
- International Center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ICTSD]. Developing Countries Table Food Security Proposal at WTO. Bridge Weekly Trade News Digest, Vol. 16, No. 39, 14 November. <http://www.twinside.org.sg/title2/wto.info/2013/twninfo130708.htm>
- Third World Network[TWN]. 2013. Agriculture: Chair Reports on Consultations on G-33, G-20 Proposals.
- WTO. 2013. G-33 Non Paper,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JOB/AG/25, 3 October.
- _____. 2012. G-33 Proposal on Some Elements of TN/AG/W/4/Rev.4 for Early Agreement to Address Food Security Issues.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JOB/AG/22, 13 November.